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의5 및 제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의 지원) 법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구입비(저상형 차량을 포함한다)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안전장비 구입비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안전장치 설치비

제8조의6(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의 범위) 법 제14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

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소

별표 3에서 제3호다목3)을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	-----	-----		
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	-----	-----		
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	-----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	-----	-----		
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	-----		
경우만 해당한다.	-----	-----		
1. ~ 9. (생 략)	1. ~ 9. (생 략)	1. ~ 9. (생 략)		
10. <신 설>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	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		
	(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계	(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을 수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을 수		
	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8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8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의 지원) 법 제14조의5제3	예산의 지원) 법 제14조의5제3		
	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에 필	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에 필		
	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	요한 인력·차량 등의 확보를 위		
	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	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		
	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산을	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신 설>

구입비(저상형 차량을 포함한
다)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안전장비 구입비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에 필요한 안전장치 설치비

제8조의6(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의 범위) 법 제14조의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
상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
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
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
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
주택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u>「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u> <u>학교</u> <u>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u> <u>관이 고시하는 장소</u>
--	--